

무역어음 할인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

전 민 규

- (정책 방향)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5월 18일 무역어음 할인 기간을 최장 270일 까지 확대하고 할인 금리도 인하한다고 발표함
 - (할인 기간) 그 동안 무역어음 할인 기간은 일률적으로 90일 이내로 제한되어 왔으나, 과거 수출 실적만으로 무역어음을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는 최장 180일까지 연장되고 수출신용장 등 근거 서류를 갖춘 경우는 270일까지로 연장되었음
 - (할인 금리) 산업은행은 지난 4월 6일 무역어음 할인 기준 금리를 8.53%에서 7.5%로 인하한데 이어 다시 0.1%p 인하하였음
- (전망)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종전에는 선적후 자금 회수 기간이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무역어음 할인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나,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들은 자금 운용에 다소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(평가)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업체에 대한 가시적인 지원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, 이번 산업은행의 조치는 정부가 수출업체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 - 산업은행은 98년 9월부터 무역어음 할인 지원을 위한 자금을 조성해 왔으나 올해 배정된 3조 원 중 현재까지 할인 잔액이 9,100억 원에 머무르는 등 지원 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이 사실임
 - 이번 조치는 단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줌으로써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

(mkjun@hri.co.kr ☎ 724-4015)

최근 주요 정책(1999. 5. 17 ~ 5. 23)

「금융기관 상시 감시 강화 대책」	금융감독원 (5.1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감시 활동: 금융기관 경영실태 평가(분기), 조기경보지표 개발·운용(월), 취약점 위주의 중점 감시(월, 수시), 정보수집·분석(수시) - 위의 감시 활동이 일부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거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전 금융기관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방침 - 이를 위해 상시감시용 전산망과 금융기관의 전산망 접속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시감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
무역어음 할인기간과 금리 개선	한국산업은행 (5.18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역어음 할인기간: 90일(기존) → 최고 270일 - 무역어음 할인금리: 7.4%(기존) → 7.3%
「여신한도제」를 신용공여한도제로 전환	금융감독원 (5.2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의 여신 범위에 사모회사채, 자회사 회사채, CP(기업어음) 등을 포함 - 거액신용 공여한도를 개인, 법인, 동일 차주 각각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15%였던 것을 10%로 축소 - 동일 차주에 대한 (지급보증+지급보증)이 은행 자기자본의 25%를 초과할 수 없음 - 한도 초과분(약 30조 원 정도로 추정)은 2002년까지 해소 - 회사정리나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기업, SOC 투자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를 허용
SOC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「민자유치 처리요령」 개정	건설교통부 (5.2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부(건설교통부)와 민간 기관(상공회의소 등)의 설명회 개최 - APEC 투자박람회(6/2~5) 기간중 SOC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정책 소개 - 외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미국에서 홍보활동 전개(6/25, 워싱턴 상공회의소) - 사업계획서 평가·협상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

주요 정책 정보(1999. 5. 24 ~ 5. 30)

5.28 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산업자원부) 「무역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공청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자원부가 원안을 작성한 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동 법률안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실시 - 금번 공청회에서는 관련부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·삭제되었던 조항들이 논의의 초점이 될 것임 · 조성 사업 대상에 종합상사 포함 여부 · 해외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여부 · 정부의 무역기반 조성자금 확대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 · 무역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정보통신기금 사용 여부
5.25(화) ~ 5.29(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·미 회담(5/25~28), 한·미·일 고위정책협의회(5/2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련의 정치적인 협의 내용과 그 결과가 현재 추진중인 민간기업의 각종 대북 투자 사업(관광사업, 공단 조성 등)에 영향을 미칠 것임